

2023.08.01.개정 시행

① 특허 등록료 인하

- (내용) 특허 등록료 전구간에 대하여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 인하(개인·중소기업·대기업 등 대상 구분 없음)

< 특허 등록료 개정 전·후 비교 >			
■ (현행)	(기 : 기본료, 가 : 가산료)	■ (개정)	(기 : 기본료, 가 : 가산료)
(1~3년)	기15천원, 가1항당 13천원	(1~3년)	기13천원, 가1항당 12천원
(4~6년)	기40천원, 가1항당 22천원	(4~6년)	기36천원, 가1항당 20천원
(7~9년)	기100천원, 가1항당 38천원	(7~9년)	기90천원, 가1항당 34천원
(10~12년)	기240천원, 가1항당 55천원	(10~12년)	기216천원, 가1항당 49천원
(13~25년)	기360천원, 가1항당 55천원	(13~25년)	기324천원, 가1항당 49천원

- (시행)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'23.8.1.인 건부터,
연차등록료는 납부일(정상납부기간내)이 '23.8.1.인 건부터 적용
- ※ '23.8.1. 전에 연차등록료를 일괄납부한 경우, 개정 이전 규정 적용(등록료 인하에 따른 반환 없음)
- ※ 특허권에만 해당되며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은 해당없음

②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

- (내용) 특허권과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를 최저금액인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4만원으로 인하

< 권리별 이전등록료 개정 전·후 비교 >



- (시행) '23.8.1. 이전등록 신청부터 적용

③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

- (수수료 조정) 출원·등록단계의 기존 상표 수수료에서 1만원 인하
 - (적용대상) 상표등록출원료·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(관련 보정료), 재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(분할납부 포함), 지정상품 추가등록료, 존속기간갱신등록료(분할납부 포함)
- (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) 1상품류당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기준을 현행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
 - (적용대상) 상표관련 지정상품 가산금에 일괄 적용
 - *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개당 2천원(분할납부는 1천원)의 가산금은 동일

< 상표 수수료 및 가산금 기준 >

- **상표 수수료 조정** 출원·등록단계에서의 상표 수수료를 1만원씩 인하
- **가산금 부과 조정** 지정상품 개수 기준을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

- (시행) 아래 표 참고

'23.8.1.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
상표등록출원료(보정료)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(보정료) 설정등록료, 지정상품 추가등록료,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
'23.8.1. 청구 또는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
재심사청구료,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관련

④ 특허권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

- (내용) 분할출원 횟수당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변경

< 분할출원료 개정 전·후 비교 >

- **현행**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
- **개정** 2회(신규 출원료의 2배) → 3회(3배) → 4회(4배) → 5회 이상(5배)

- (시행)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없이, '23.8.1.부터 횟수 기산

5 면제자의 면제건수 조정

- (내용) 면제건수를 권리별(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) 연간 5건으로 조정

< 면제건수 개정 전·후 비교 >

- **현행** 연간 권리별 10건
- **개정** 연간 권리별 5건

- (시행) '24.1.1. 출원 건부터 적용

6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

- (내용)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를 일정 부분 인상

< 특허 심사청구료 개정 전·후 비교 >

- **현행** (기본료 : 143,000원, 가산료 : 청구항 1항당 44,000원)
- **개정** (기본료 : **166,000원**, 가산료 : 청구항 1항당 **51,000원**)

- (시행) '23.8.1. 특허출원 건부터 적용

참고

개정 관련 수수료 상세 변동 내역 (개정내용만 기재)

- (공통변경사항)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 :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(상표분할갱신은 1천원)

수수료명칭	현행	개정	시행기준
분할출원료	특허권의 신규출원료	1회: 특허권의 신규출원료 2회: 신규출원료의 2배 3회: 신규출원료의 3배 4회: 신규출원료의 4배 5회이상: 신규출원료의 5배	이전횟수에 상관없이, '23.8.1.부터 횟수기산
특허심사청구료	기본료 14만3천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4천원을 가산	기본료 16만6천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1천원을 가산	'23.8.1. 특허출원건부터 적용
특허권의 이전등록료	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: 매건 5만3천원	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: 매건 4만원	'23.8.1. 이전등록 신청부터 적용
상표권의 이전등록료	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: 매건 11만3천원	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: 매건 4만원	
상표등록출원료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 (전자문서로 제출) (단체표장등록출원료·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료·업무표장 등록출원료·증명표장 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 및 지정업무를 포함)	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----- 5만2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'23.8.1.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
	그 지정상품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: 1상품류 구분마다 5만6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만6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

상표등록출원료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 (서면으로 제출) (단체표장등록출원료 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료 · 업무표장 등록출원료 · 증명표장 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 및 지정 업무를 포함)	1상품류구분마다 7만2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----- 6만2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'23.8.1. 상 표 등 록 출 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부터 적용
	그 지정상품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: 1상품류 구분마다 6만6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만6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
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(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)	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: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산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만2천원 ----- -----	'23.8.1. 상 표 등 록 출 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부터 적용
	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: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지정 상품의 가산금 부과 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 마다 2천원을 가산	----- ----- 10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

재심사청구료 (서면으로 제출)	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: 초과 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만2천원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만2천원	'23.8.1. 청구부터 적용
	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를 초과하는 경우: 초과 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,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 마다 2천원	----- ----- 10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
상표권의 설정등록료 (단체표장권·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·업무표장권 ·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)	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'23.8.1. 상표 등록출원 부터 적용
상표권의 설정등록료 (2회로 분할 납부)	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만2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 (1천원을 가산)	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2만2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 (1천원을 가산)	'23.8.1. 상표 등록출원 부터 적용
지정상품 추가등록료	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 - 지정상품 가산금	'23.8.1. 지정상품 추가 등록출원부터 적용

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	1상품류구분마다 <u>31만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	1상품류구분마다 <u>30만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	'23.8.1. 신청부터 적용
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(2회로 분할 납부)	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<u>19만4천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 (1천원을 가산)	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<u>18만4천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 (1천원을 가산)	'23.8.1. 1회차신청부터 적용
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(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)	1상품류 구분마다 <u>34만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	1상품류구분마다 <u>33만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	'23.8.1. 신청부터 적용
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(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) (2회로 분할 납부)	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<u>21만3천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 (1천원을 가산)	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<u>20만3천원</u> - 지정상품 가산금 (1천원을 가산)	'23.8.1. 1회차신청부터 적용
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(전자문서로 제출)	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4만원 - <u>지정상품 가산금</u>	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4만원 - <u>지정상품 가산금</u>	'23.8.1.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부터 적용
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(서면으로 제출)	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5만원 - <u>지정상품 가산금</u>	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5만원 - <u>지정상품 가산금</u>	
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(서면으로 제출)	매건 <u>27만원</u>	매건 <u>26만원</u>	
면제자의 권리별 연간 면제 건수	권리별 연간 10건	권리별 연간 5건	'24.1.1. 출원부터 적용